# 2024 예술경영대상 공모 안내(안)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전문예술법인·단체 및 예술기업(단체)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**<예술경영대상>**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올해 13회를 맞는 **<2024 예술경영대상>** 공모에 예술경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·단체와 예술기업(단체), 예술경영인(개인)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추천을 부탁드립니다.

### □ 공모개요

- o (공 모 명) 2024 예술경영대상 공모
- o (공모목적) 예술경영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- o (공모 및 추천 대상) 예술경영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전문예술법인·단체, 예술기업(단체) 및 예술경영인(개인)
- o (공모기간) 공모일 ~ 10. 7.(월) 18:00 (예정)
- o (선정규모) 3개 유형, 6개 우수사례

### □ 세부내용

- (공모 및 추천 기준) 최근 3년여간(2021.1.1.~공모마감일)의 예술경영분야 활성화 및 문제해결, 발전에 기여한 전문예술법인·단체, 예술기업(단체) 및 예술경영인(개인)
- o (신청사례 주제) 예술경영 관련 분야별 우수사례

구분	우수사례 예시
사업기획	신규 사업모델·브랜드 개발·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 및 관객 개발 사례 등
조직운영	조직(고용)구조·문화, 업무환경 및 직원복지·교육 개선 등을 통한 경영 활성화 시례 등
재원조성	투자.후원 유치, 정기 후원회원 조직.발굴, 온라인 활용 재원조성 사례 등
해외진출	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례 등

### o (유형)

공모·추천 유형		대상	
대분류	소분류	-li ë	
		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<b>공공 분야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</b>	
유형 1 공모	공공	①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공공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설립목적 등이 지방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재단 ③ '공직자 윤리법」상 공직유관단체 지정기관 ④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의 지휘관라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	
	민간	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<b>민간 분야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</b>	
유형 2 공모	일반	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 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예술분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예술기업(단체) 및 비영리법인(단체)	
유형 3 공모·추천	개인	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<b>예술경영인</b> (개인)	

#### \* (예술기업)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
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

- \*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 (개정 23.6.20.) (시행 23.12.21.)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- \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, 게임,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

### o (선정 및 포상규모) 3개 유형, 6개 우수사례 등(총40백만원)

구분		유형1 유형2 전문예술법인·단체 예술기업(단처		유형3 예술경영인(개인)
무히눼으과과터 자과사	상장/시상금	(공공) 1매 / 없음	(일반) 1매 / 10백만원	(개인) 1매 / 5백만원
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		(민간) 1매 / 10백만원	(글린) I메 / 10펙린션   	
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	상장/시상금	1매 / 10백만원		
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	상장/시상금	1매 / 5백만원		
합계			40백만원	

\*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·문체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름

## o (추진절차)

공모 및 추천 접수	추가서류접수 및 요건검토	유형 1,2 서류심사	유형 3 심사	유형 1,2 발표심사	선정발표	워크숍	예술경영대상 시상식
공모일 ~ 10월 7일	10월 2주	10월 3주	10월 4주	11월 2주	11월 3주	11월 4주	12월 5일
이메일 접수	서류미비, 중복신청, 신정자격 등	유형별 4배수 내외 선정	유형 3 1건 최종 선정	유형 1,2 5건 내외 최종 선정	최종선정결과 공고	최종 선정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	최종 선정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

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 □ 공모 및 추천 접수

# o (제출서류)

구분	유형1 전문예술법인·단체	유형2 예술기업 및 단체	유형3 예술경영인(개인)
필수	① 공모신청서 ②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서 ③ (법인)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 (단체)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	① 공모신청서 ② (법인)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 (단체)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	① 공모신청(추천)서
선택	① 전문예술법인·단체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	① 예술기업(단체)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	① 포트폴리오 등 ② 관련 증빙자료

- \* 세부내용 공모신청서내 [예술경영대상 공모 제출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안내] 참조
- \* 유형11, 유형[2]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선정단체에 한하여 발표심사용 PPT 추가 제출 요청 예정
- \* 유형(3) 추천의 경우 접수 후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요청 예정
- \* 최종 선정사례의 신청서 작성 내용은 보도자료 및 홍보물로 활용될 수 있음

- o (접수기간) 공모일 ~ 10. 7.(월), 18시까지
  - \*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됨
- o 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
  - (접수처) artsdb@gokams.or.kr (2024 예술경영대상 운영 사무국)
  -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파일(ZIP) 하나로 제출(파일명 및 메일 제목 통일)
  - 파일명 및 메일 제목 : 2024예술경영대상[유형 1/2/3 중 선택 기재] 단체/성명
    - \* 예시 : 2024예술경영대상 [유형1] 예술경영지원센터.zip

### □ 심사 및 선정

- o (심사일정) 2024년 10월 3주 ~ 11월 2주
  - (유형 1,2 1차-서류심사) 10월 3주 예정
  - **(유형 3 심사)** 10월 4주 예정
  - (유형 1.2 2차-발표심사) 11월 2주 예정
    - 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- o (심사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(3~5인 내외)

구분	유형1	유형2	유형3
1차 심사	• 서류심사 진행 • 유형[1]의 경우 공공, 민간 각 4배수		• 서류심사 최종 선정
(10월 3주)	총 8건 내외	총 4건 내외	(10월 4주)
2차 심사	• PT심사 진행		
(11월 2주)	총 5건 내외		1건

# • (심사기준) 주제는 통합하며, 유형별 구분하여 심사

구 분		항 목	배점
	1차 (서류)	공모주제별 개선 사례의 수행실적(계량할 수 있는 실적 포함)	30
		타 사례와 구별되는 혁신성과차별성	30
		문제해결 방식의 우수성	20
유형		해당 사례의 예술분야 기여도	20
1.2	2차 (발표)	타 사례와 구별되는 혁신성과 차별성	30
		문제해결 방식의 우수성	30
		해당 사례의 예술분야 기여도	30
		발표 전달력	10
	1차 (서류)	공모주제별 개선 사례의 수행실적(계량할 수 있는 실적 포함)	30
유형		타 사례와 구별되는 혁신성과 차별성	30
3		문제해결 방식의 우수성	20
		해당 사례의 예술분야 기여도	20

- o (심사 검토사항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제외 혹은 감점
  -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
  - 동일한 사례로 본 공모 및 타 기관에서 인증・수상한 경우
  -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

- o (선정발표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안내
  - **(최종선정 우수사례 발표)** 2024년 11월 3주(예정)
    - \* 최종 선정단체/개인은 예술경영대상 시상식 참석,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참여 및 사례 발표 필수

### □ 문 의

- o (전화) 02-708-2237 (2024 예술경영대상 운영 사무국)
- o (운영시간) 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
### [참조] 포상기준 및 표창 취소

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·문체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름

### ※ 장관포상 제외자

- 임직원이 포상제외자에 해당하거나, 포상대상 단체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경우
- 포상제외자 :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, 산재비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,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, 임금체불사업주, 각종 비리 부조리,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여 단체·법인이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8조 및「상훈법」제8조에 해당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

#### ※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(표창 취소의 절차)

- 표창 추천권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

#### ※ 상훈법 제8조(서훈의 취소 등)

-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서훈 취소 및 물건·금전을 환수함
- 1)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- 2)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
- 3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